

종 자 산 업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종자 무병화인증제 도입, 과수화상병의 효율적 방역을 위한 종자 생산·판매이력관리제 도입, 판매목적 이외 수입종자에 대한 신고 의무화,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개정한 종자산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 종자산업법 제19119호 '23.12.27. 개정, '23.12.28 시행(일부조항 '24.6.28)

2. 주요내용

가. 종자(묘목)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

(안 4장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14까지 신설)

- 무병한 종자의 생산·보급으로 농업 생산의 안정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업자가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 등 5대 과수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이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① 종자의 무병화인증 신청은 무병화인증지정기관에 하고, 신청서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별지제17호의2 서식 신설)
- ②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 생산에 필요한 무병화

인증 기준 마련(안 제23조의3, 별표3의2 신설)

③ 무병화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

(안 제23조의4, 별지제17호의3 서식 신설)

④ 무병화인증 종자의 인증표시에 필요한 표시사항 규정

(안 제23조의5, 별표3의3 신설)

⑤ 무병화인증의 갱신 방법(안 제23조의6 신설)

⑥ 무병화인증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인증종자업자의 시정조치,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23조의7, 별표3의4 신설)

⑦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23조의8, 별표3의5 신설)

⑧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방법

(안 제23조의9, 별지 제17호의4·17호의6·17호의7 서식 신설)

⑨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방법(안 제23조의10 신설)

⑩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시 신고 방법

(안 제23조의11, 별지 제17호의5 서식 신설)

⑪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23조의12 신설)

⑫ 무병화인증기관에서 거짓 등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23조의13, 별표 3의6 신설)

⑬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 근거

(안 제23조의14, 별지 제17호의8 서식 신설)

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변경

(안 제27조제2항 개정, 제2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는 행정기관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한 수리로 개정됨에 따라 신고수리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20일 이내 통지 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실이 거짓일 때

불수리를 통지할 필요가 있음

- ① 현행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받았을 때”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적합한 경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정(안 제27조제2항 개정)
- ② 신고를 받고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2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수리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7조제3·4항 신설, 별지 제22호의2·제22호의3 서식 신설)

다. 과수화상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종자의 생산·판매이력 관리제도 도입(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 과수화상병은 묘목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묘목의 생산·판매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묘목에 의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등이 구매한 묘목이 어디서 생산했고 누구에게 판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판매이력을 관리할 필요

- ① 법 제39조의3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판매자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관련 서식 별지제18호 및 제19호 개정)
- ② 법 제39의4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3부터 4까지 신설)

라. 판매이외 목적으로 수입하는 종자에 대한 신고 규정 마련
(안 제28조의5, 별지 제26호의2·제26호의3 서식 신설)

○ 과수는 외국의 보호품종이 자가소비용 등으로 수입되어 무단 증식·유통될 경우 이를 알지 못하고 구매한 농가가 추후 품종보호권자와 침해 분쟁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종자 수입단계부터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품종보호권리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제23조의2(무병화인증 신청)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자는 묘목을 포장에 식재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신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종자업등록증 사본
2.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계획서
3.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4. 어미나무의 종자검정 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에 한한다)

제23조의3(무병화인증 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이하 “무병화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4(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무병화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무병화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무병화인증 표목 출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5(무병화인증의 표시) ①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는 표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내역서에 무병화인증 표목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무병화인증 표시사항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23조의6(무병화인증의 갱신) ①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이하 “인증종자업자”라 한다)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무병화인증(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 갱신신청 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계획서
2. 무병화인증 갱신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 갱신 대상은 해당 신청 인증종자가 최초 무병화인증 신청 당시의 생산포장에 식재된 위치에서 이동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갱신) 신청서 검토와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갱신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무병화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23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품질규격 확인을 위한 표본검사와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은 1회로 한정한다.
- ⑤ 무병화인증기관은 인증종자업자에게 무병화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절차와 유효기간 끝나는 날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7(무병화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또는 회수·폐기명령의 기준·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23조의8(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제23조의9(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묘목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8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종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
5. 유효기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10(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①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7조의4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묘목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 포함)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23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기관에 무병화인증기관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갱신절차와 유효기간 끝나는 날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11(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6조의5 제5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은 지정받은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성명

3. 법인등록번호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12(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무병화인증의 심사에 관한 서류·자료 및 인증서 발급내역

3. 무병화인증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등에 관한 서류·자료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라 전년도의 무병화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13(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법 제36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제23조의14(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 ① 국립종자원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의8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자, 무병화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 표시방법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별 연 1회 이상
2. 수시조사: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민원·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
 - ② 법 제36조의8제4항에 따라 미리 점검이나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려는 때에는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법 제36조의8제5항에 따른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따른다.
 - ④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2항 중 “받았을 때”를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적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받아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에 연장하고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불수리 통지

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첨부서류, 첨부물건이 제출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출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이력관리의 대상작물 및 기록·보관사항)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사과, 배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가 기록·보관해야하는 종자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의 생산이력

가. 종자의 생산과 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접수 및 대목 포함)의 출처

나. 종자의 생산장소 및 면적

다. 종자의 생산수량

라. 종자의 생산·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접수 및 대목 포함)의 품종명

마. 생산업체의 명칭 또는 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종자의 판매이력

가. 종자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나. 종자의 품종명

다. 종자의 판매수량

라.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종자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은 생산일 및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할 때에는 장부 또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생산이력의 경우 생산일로부터 5년간, 판매이력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3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국립종자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이력 관리
2. 제2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종자판매자의 종자 판매이력 관리
3.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4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른 자

료제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종자의 생산 이력
2. 제2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종자의 판매 이력
3. 그 밖에 국립종자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료제출 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목록
4.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28조의5 (종자의 수입 신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판매이외의 목적으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고품종의 사진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4.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종자 수입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란에 법 제27조제4항의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	----------

별표 3의2부터 별표 3의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무병화인증 기준(제23조의3 관련)

1. 무병화인증 기준의 충족 요건

무병화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①품질 규격, ②재배포장 및 재배용수, ③생산 및 관리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2. 무병화인증 기준

가. 품질 규격

- 1) 무병화인증을 신청하는 종자(묘목)는 무병재료(접수, 대목)만을 사용하여 생산할 것
- 2) 생육기간에 3개의 시기(4~6월, 7~9월, 10~익년 2월) 중 선택하여 2회 이상 소집단을 구성하고 육안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검사 보급종 검사 규격을 충족할 것. 다만, 포트묘의 경우 묘목 출하 1개월 전까지 소집단을 구성하여 육안으로 표본검사와 함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를 실시하여 표본검사 및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 모두 보급종 검사규격을 충족할 것.

가) 소집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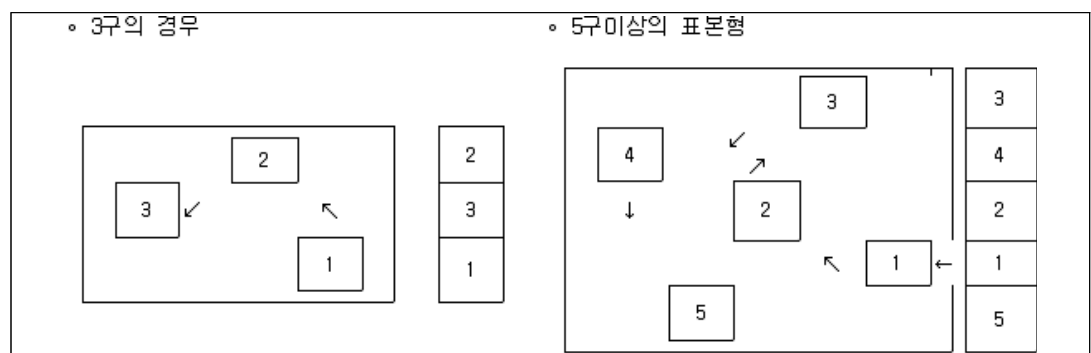
과종별, 생산자별, 품종별, 품위별로 편성하되 소집단 크기는 10,000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표본검사

(1) 표본 조사구 결정

포장의 크기	표본조사구수
40.0a 까지	3개 조사구 이상
40.1 ~ 60a	5개 조사구 이상
60.1a 이상	30a 초과시마다 1구씩 추가 (예: 85a의 경우는 6개 조사구)

(2) 표본 조사구 선정



다) 포장검사 검사규격

항목 생산단계	최고한도(%)			
	이품종주	이종주	병주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무	무	무	2.0
원종포	무	무	무	2.0
모수포	무	무	무	6.0
증식포(보급종)	1.0	무	2.0	10.0

※ 특정병(바이러스·바이로이드)은 다음과 같다.

- 사과: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SGV(Apple stem grooving virus), ASPV(Apple stem pitting virus), ApMV(Apple mosaic virus), ASSVd(Apple scar skin viroid)
- 배: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SGV(Apple stem grooving virus), ASSVd(Apple scar skin viroid)
- 복숭아: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HSVd(Hop stunt viroid)
- 포도: GLRaV-1(Grapevine leafroll associated virus-1), GLRaV-3 (Grapevine leafroll associated virus-3), GFkV(Grapevine fleck virus)
- 감귤: CTLV(Citrus tatter leaf virus), CTV(Citrus tristeza virus), SDV(Satusma dwarf virus), CiMV(Citrus mosaic virus)

※ 기타병은 사과·배·복숭아의 경우 근두암종병(뿌리혹병)을 포도는 근두암종병(뿌리혹병)·뿌리혹선충(필록세라)을 감귤은 궤양병을 말한다.

3) 2회차 포장검사 시 표본 조사구에서 아래의 시료 추출량 및 방법에 따라 시료를 추출하고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을 실시하여 포장검사 검사규격의 특정병 최고한도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시료 채취 시기 및 부위

시료 채취시기 및 부위	채취량
○ (4~6월) 발아신초, 경지수피, 꽃 ○ (7~9월) 신초선단부 유엽, 성엽, 엽병, 과피 ○ (10~2월) 줄기수피, 성엽, 과피	묘목당 5점 (고르게)

나)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채취는 나무 1주 단위로 잎 등 필요한 검정부위를 나무 전체에서 고르게

5개를 깨끗한 시료용기(지퍼백 등 위생봉지)에 채취한다.



다) 시료 추출량

과수 묘목 검사단위 크기에 따른 감염 수준별 최소 표본추출(임의표본추출)크기에서 최소표본의 크기(표본추출 95% 신뢰수준, 5% 검출 수준) 이상으로 한다.

출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31(FAO/IPPC 사무국, 2016년)

검사단위의 크기(주)	95% 신뢰수준에서 검출(감염)수준 별 최소 표본의 크기					99% 신뢰수준에서 검출(감염)수준 별 최소 표본의 크기				
	5%	2%	1%	0.5%	0.1%	5%	2%	1%	0.5%	0.1%
25	24	-	-	-	-	25	-	-	-	-
50	39	48	-	-	-	45	50	-	-	-
100	45	78	95	-	-	59	90	99	-	-
200	51	105	155	190	-	73	136	180	198	-
300	54	117	189	285	-	78	160	235	297	-
400	55	124	211	311	-	81	174	273	360	-
500	56	129	225	388	-	83	183	300	450	-
600	56	132	235	379	-	84	190	321	470	-
700	57	134	243	442	-	85	195	336	549	-
800	57	136	249	421	-	85	199	349	546	-
900	57	137	254	474	-	86	202	359	615	-
1,000	57	138	258	450	950	86	204	368	601	990
2,000	58	143	277	517	1553	88	216	410	737	1800
3,000	58	145	284	542	1895	89	220	425	792	2353
4,000	58	146	288	556	2108	89	222	433	821	2735
5,000	59	147	290	564	2253	89	223	438	840	3009
6,000	59	147	291	569	2358	90	224	442	852	3214
7,000	59	147	292	573	2437	90	225	444	861	3373
8,000	59	147	293	576	2498	90	225	446	868	3500
9,000	59	148	294	579	2548	90	226	447	874	3604
10,000	59	148	294	581	2588	90	226	448	878	3689

4) 과수별 묘목의 길이 및 직경 기준을 충족할 것

작 물	묘목의 길이(cm)	묘목의 직경(mm)	주요 병해충 최고한도
○ 사과			근두암중병(뿌리혹병): 무
- 이중접목묘	120 이상	12 이상	
- 왜성대목자근접목묘	140 이상	12 이상	
- 포트묘(접목)	25 이상	2 이상	
○ 배	120 이상	12 이상	근두암중병(뿌리혹병): 무
○ 복숭아	100 이상	10 이상	근두암중병(뿌리혹병): 무
○ 포도			근두암중병(뿌리혹병): 무
- 접목묘	50 이상	6 이상	
- 삽목묘	25 이상	6 이상	
- 포트묘(접목)	50 이상	2 이상	
○ 감귤류			궤양병: 무
- 접목묘,	80 이상	7 이상	
- 포트묘(접목)	80 이상	7 이상	

주) 1) 묘목의 길이 : 지체부에서 묘목선단까지의 길이

2) 묘목의 직경

가) 접목부위 상위 10cm 부위 접수의 줄기 직경. 단, 포도 접목묘는 접목부위 상하위 10cm 부위 접수 및 대목 각각의 줄기 직경, 포도 삽목묘는 신초분기점 상위 10cm 부위의 줄기 직경

나) 다만, 포트묘의 경우 사과는 접목부 상위 10cm 부위, 포도는 접목부 상위 3cm 부위, 감귤은 접목부 상위 5cm 부위의 줄기 직경

3) 대목의 길이 : 사과 자근대목 40cm 이상, 포도 대목 25cm 이상, 기타 과종 30cm 이상

4) 사과 왜성대목자근접목대묘측지수 : 지체부 60cm 이상에서 발생한 15cm 길이의 곁가지 5개 이상

5) 배 잎눈 개수 : 접목부위에서 상단 30cm 사이에 잎눈 5개 이상

6) 주요 병해충 판정기준 : 증상이 육안으로 나타난 주

나. 재배포장

- 1) 동일한 묘목 생산지에서 3년을 초과하여 생산하지 말 것. 다만, 선충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해 토양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꽃가루나 매개충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변의 무병묘로 확인되지 않은 같은 속·종의 나무나 과수원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격리되어 있어야 할 것

- 3) 재배포장은 토양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소독은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

다. 생산 및 관리

- 1) 품종 또는 계통별로 묘목을 재식하여야 할 것
- 2) 70% 알코올 및 유효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 1% 함유 또는 락스 4배 희석액을 비치하고, 재배포장 출입 시 사용된 신발과 농기자재들을 5분 이상 소독할 것
- 3) 농기계는 출입 전후에 식물체의 일부분이나 흙 등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세척할 것
- 4) 가위 등 장비는 항상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시마다 1%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소독해야 할 것
- 5)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 병해충 방제, 물관리, 양분관리를 적정 수준으로 실시할 것
- 6) 병해충 방제 및 농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무병화인증의 표시사항(제23조의5 관련)

1. 앞면

무 병 화 인 증	무병화 인증번호(인증기관코드-인증종사업자코드-과종-품종-일련번호)	
	① 작물명:	⑤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② 품종명:	⑥ 무병화인증일자:
	③ 대목명:	⑦ 무병화인증 유효기간:
	④ 생산업체명(종사업등록번호):	⑧ 무병화인증기관:
인증기관명 (직인)		

비고

가. 바탕색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나. 표지 크기는 10cm(가로) x 3cm(세로) 이상으로 한다.

2. 뒷면

※ 품종의 특성 및 재배상의 주의사항

무병화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제23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다. 무병화인증 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무병화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수량, 유효기간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라. 인증종자의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인증종자의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회수·폐기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종자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1호	인증취소	—
2)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 등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2호	시정조치	인증취소
3)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3호	시정조치	인증취소
4)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무병화 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4호	인증취소	—

나. 인증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1호	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및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인증종자 회수·폐기
2)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 등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2호	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3)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3호	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4)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무병화 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4호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종자원장이 실시한다.

나.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해당 인증종자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제23조의8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써 무병화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것

나. 인력

- 1). 무병화인증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으로 인증책임자 1명, 감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2). 1)에 따른 인력 중 1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생명과학 계열(농학, 원예, 육종, 생물학 등) 등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중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4년 이상 농학, 육종, 원예 등의 연구·검사·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종자관리사 등 이와 관련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다)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무병화인증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무병화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 인증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분자표지 분석, 성분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가.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바이러스 분석실로 6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기기별 1대 이상 갖추어야 하며, 검정 장비는 다음과 같다.

- 1) 시료분쇄장비(막자사발 등 시료분쇄기)
- 2) 핵산추출장비(자동핵산추출기)
- 3) 유전자증폭장비(PCR 기기)
- 4) 유전자판독장비(전기영동장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3조의1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라.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의 내용에 따라 인증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기간에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제36조의5제8항제1호에 따른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무병화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제36조의5제8항제2호에 따른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따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른 무병화 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4 제2호사목 위반행위란 사목 중 “판매한”을 “판매한 경우 또는 거짓으
로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위반행위란 차목 중 “앳은”을 “앳거나 거
짓으로 표시한”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차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 수수료

1) 지정·갱신 신청: 건당 30만원

2) 지정·갱신 심사를 위한 현지조사 출장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금액을 적용하고, 출장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며,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카. 무병화 인증·갱신 신청 수수료

1) 무병화인증 수수료는 인증심사를 위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품질검사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항 목	내 용	수수료	산출근거
<u>심사·검사비</u> (가+나+다)	가. 서류심사	신청건당 5만원	중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6 품종목록 서류심사료 준용
	나. 현장심사	심사료 20만원 +10a당 2만원	심사료 + 중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6 포장검사료 준용
	다. 품질검사	검사료 20만원	검사료 + 6점(59시료)*4

	(바이러스·바이로이드 실험 내검사)	+점당 4만원	만원=24만원
--	------------------------	---------	---------

2) 무병화 인증 심사를 위한 현지조사 출장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금액을 적용하고, 출장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며,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무병화인증 수수료 반환 기준

항 목	반환 사유		반환금액
심사·검사비	서류심사, 현장심사, 품질검사	실시 전	전액반환
		실시 후	반환대상 아님

타. 그 밖의 수수료

- 1)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 1건당 5백원. 다만,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더한다.
- 2) 각종 서류의 사본 신청: 1면당 2백원

2. 수수료의 납부기간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2)의 등재심사 수수료: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나. 제1호다목3)의 종자검사 수수료: 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제1호사목2)의 시험·분석 수수료 및 같은 호 아목2)의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라. 그 밖의 수수료: 신청 시

별지 제17호의2부터 별지 제17호의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 설>

무병화 인증(신규·갱신) 신청서(제23조의2 관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규] 묘목 출하 1개월 전까지 [갱신] 60일 이내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사업장 소재지				
	④법인명칭 (종자업등록번호:)		⑤전화번호		
신청 내용	⑥ 신청구분		[]신규 []갱신		
	⑦ 작물명				
	⑧ 품종명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⑨ 대목명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⑩ 생산계획 면적 및 수량	면적(㎡)			
		수량(주)			
		묘목식재일	출하예정일		
	⑪ 원종·어미나무 관리기관	원종			
어미나무					
⑫ 바이러스 검정기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종자산업법 제36조의5에 따른

귀하

무병화인증기관의 장

첨부서류	1. 종자업 등록증 사본 1부 2. 무병화인증 신청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계획서 1부 3. 무병화인증 신청종자의 포장재식도 1부 4. 어미나무의 종자검정 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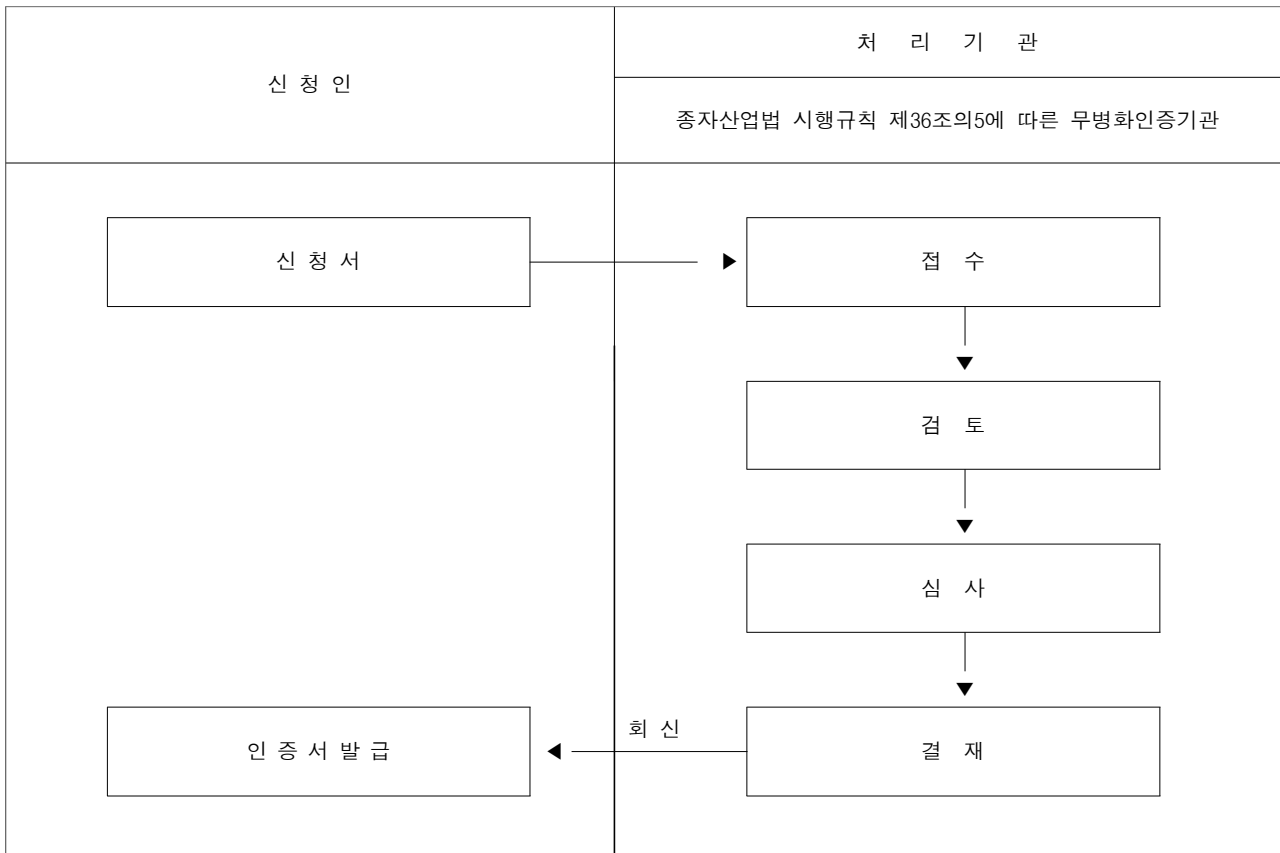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어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첨부서류 중 제1호는 최초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첨부서류 중 제2호는 품종별로 작성하되, 어미나무 계통이 다를 경우 동일 품종이더라도 어미나무 계통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3호는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무병확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첨부서류 중 제4호는 신청품종의 어미나무에 대한 바이러스 검정 확인서를 말하며 어미나무 계통별로 바이러스 검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 설>

무병화 인증서(제23조의4 관련)

신 청 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생 년 월 일
	③ 사업장 소재지	
	④ 법 인 명 칭 (종자업등록번호:)	⑤ 전 화 번 호

인 증 내 용

⑥ 인증번호	인증기관 코드 - 인증종자업체 코드 - 과종 - 품종 - 일련번호
⑦ 작물명	
⑧ 품종명	
⑨ 인증수량	
⑩ 유효기간	

「종자산업법」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무병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종자산업법 제36조의5에 따른

(직인)

무병화인증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150g/㎡) 또는 중질지(80g/㎡)]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신 설>

[] 지 정
무병화인증기관
[] 갱 신

신청서(제23조의9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대상	대상작물	☐ 사과 ☐ 배 ☐ 포도 ☐ 복숭아 ☐ 감귤
	생산단계	☐ 원원종 ☐ 원종 ☐ 어미나무 ☐ 보급묘

「종자산업법」 제3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병화인증기관(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제23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묘목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 포함)	수수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제23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묘목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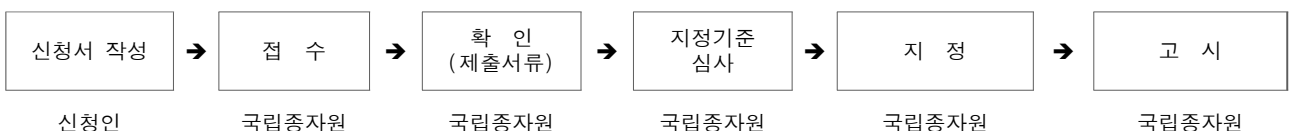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제23조의10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구 분	당 초	변 경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업무 수행 여부 [] 여 [] 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10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검토 국립종자원	→	변경 사실 확인 국립종자원	→	변경 여부 판정 국립종자원	→	지정서 작성 (지정서 내용 변경 시) 국립종자원	→	지정서 발급 국립종자원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제23조의9 관련)

1. 기관명(대표자):
2.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3. 종자업등록번호:
4. 소재지(전화번호):
5.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지정일):
6. 인증대상: ☐ 사과, ☐ 배, ☐ 포도, ☐ 복숭아, ☐ 감귤
7. 유효기간:

「종자산업법」 제3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9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종자원장

직인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7서식] <신 설>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신 설>

(앞쪽)

제 호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국립종자원

60mm×90mm(PET-G 카드, 연노란색)

(뒤쪽)

조사 공무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8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종자원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무병화인증 종자의 판매·보급 과정 조사 2.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이 증을 다른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면 안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9호 서식 중 “주시설의 소재지”를 “종자의 생산장소
묘목 접수 대목”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부터 별지 제22호의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발행번호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 명칭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 반명		
품종의 명칭		
연장기간		
연장사유		

「종자산업법」 제3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수리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직인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신설>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불수리 통지서

발행번호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 명칭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불수리 사유		

「종자산업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는 수리되지 않았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직인

별지 제26호의2부터 별지 제26호의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신설>

종자 수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 명칭	전화번호	
②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④품종의 명칭			
⑤종자의 수량			
⑥종자의 용도			
⑦종자를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위 신고인(대리인)은 본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과 일체의 제출서류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종자산업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종자 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유전자변형 종자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4.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자산업법」에 따른 해당 품종의 신고 접수, 신고 내용의 확인과 유통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종자산업법」 제40조의2에 따른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관할세무서, 수입적응성시험기관에 제공하고, 종자 수출입 신고 또는 식물검역 신고 내용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해당 품종의 신고가 취소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신고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의 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⑥ “종자의 용도”란에는 자가소비나 연구용 등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⑦ “종자를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란에는 신고인이 종자를 구입하거나 양도받은 출처와 구체적인 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작성방법은 별지 제22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추가 등 정정을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고인(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제출



접수 ➔ 서류 검토 ➔ 결정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산림청·국립종자원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

신 고 번 호 :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 명칭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종자의 수량		
「종자산업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에 따라 종자의 수입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생산이력의 기록·보관에 관한 부분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4장의2 종자의</u> <u>무병화(無病化)인증</u> <u>제23조의2(무병화인증 신청) 법</u> <u>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를</u> <u>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u> <u>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u> <u>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u> <u>“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u> <u>는 자는 묘목을 포장에 식재 후</u> <u>1개월 이내 별지 제17호의2서식</u> <u>의 무병화인증(신규) 신청서에</u> <u>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u> <u>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u> <u>받은 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u> <u>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u> <u>한다.</u> <u>1. 종자업등록증 사본</u> <u>2.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생</u> <u>산·판매 및 보급 계획서</u> <u>3.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포</u> <u>장 재식도</u> <u>4. 어미나무의 종자검정 증명서</u> <u>(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u> <u>목에 한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조의3(무병화인증 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이하 “무병화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4(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무병화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무병화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무병화인증 표목 출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 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5(무병화인증의 표시) ①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

<신 설>

화인증의 표시는 요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구매자가 알
아보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내역서에 무병화인증 요목
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무병화인
증 표시사항을 첨부하는 방법으
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23조의6(무병화인증의 갱신) ①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
화인증을 받은 종사업자(이하
“인증종사업자”라 한다)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
지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무병화인증(갱신)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
병화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무병화인증 갱신신청 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계획서

2. 무병화인증 갱신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
갱신 대상은 해당 신청 인증종

자가 최초 무병화인증 신청 당시의 생산포장에 식재된 위치에
서 이동된 적이 없는 경우를 말
한다.

③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갱신) 신청서
검토와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
화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하여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하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갱신 신
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무병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
는 다음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23조의4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
만, 품질규격 확인을 위한 표본
검사와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
정은 1회로 한정한다.

⑤ 무병화인증기관은 인증종자
업자에게 무병화인증 유효기간
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절

<신 설>

<신 설>

<신 설>

차와 유효기간 끝나는 날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7(무병화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명령 및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또는 회수·폐기명령의 기준·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23조의8(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제23조의9(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5제

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묘목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8에 따른 지정기준에

<신 설>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종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
5. 유효기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10(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① 법 제36조의5제4항

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7조의4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묘목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 포함)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절차 및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23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기관에 무병화인증기관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갱신 절차와 유효기간 끝나는 날까지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

<신 설>

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11(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은 지정받은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성명
3. 법인등록번호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

<신 설>

<신 설>

신고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의12(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

2. 무병화인증의 심사에 관한 서류·자료 및 인증서 발급내역

3. 무병화인증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점검 등에 관한 서류·자료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라 전년도 무병화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13(무병화인증기관의 지

<신 설>

정취소 기준 등) 법 제36조의6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제23조의14(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 ① 국립종자원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36조의8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무병화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 표시방법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별 연 1회 이상

2. 수시조사: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민원·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

② 법 제36조의8제4항에 따라 미리 점검이나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의8제5항에 따른

제27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① (생 략)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따른다.

④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받은 경우 법
제38조의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적합한 경우-----

----.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받아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에 연장하고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불수리 통지서를 해당 신고

③ ~ ⑤ (생 략)

<신 설>

인에게 통보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첨부서류, 첨부물건이 제출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출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28조의2(이력관리의 대상작물 및 기록·보관사항)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사과, 배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가 기록·보관해야하는 종자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의 생산이력

가. 종자의 생산과 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접수 및 대목 포함)의 출처

나. 종자의 생산장소 및 면적

다. 종자의 생산수량

라. 종자의 생산·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접수 및 대목 포함)의 품종명

마. 생산업체의 명칭 또는 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종자의 판매이력

가. 종자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나. 종자의 품종명

다. 종자의 판매수량

라.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종자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은 생산일 및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할 때에는 장부 또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생산이력의 경우 생산일로부터 5년간, 판매이력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3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국립종자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이력 관리
2. 제2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종자판매자의 종자 판매이력 관리
3.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4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종자의 생산 이력
2. 제2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신 설>

종자의 판매 이력

3. 그 밖에 국립종자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료제출 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목록
4.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28조의5 (종자의 수입 신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판매이외의 목적으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고품종의 사진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
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4.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
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검
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
은 제1항에 따라 종자 수입 신
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신고
인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6
호의3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근거 법조문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 제4항	가.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이중취업을 2회 이상 한 경우 다. 업무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등록취소
	마. 삭제 <2017. 1. 11.> 바.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1회 한 경우	업무정지 1년
	사.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무병화인증 기준 (제23조의3 관련)

1. 무병화인증 기준의 충족 요건

무병화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①품질 규격, ②재배포장, ③생산 및 관리기준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2. 무병화인증 기준

가. 품질 규격

- 1) 무병화인증을 신청하는 종자(묘목)는 무병재료(접수, 대목)만을 사용하여 생산할 것
- 2) 생육기간에 3개의 시기(4~6월, 7~9월, 10~익년 2월) 중 선택하여 2회 이상 소집단을 구성하고 육안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검사 보급중 검사규격을 충족할 것. 다만, 포트묘의 경우 묘목 출하 1개월 전까지 소집단을 구성하여 육안으로 표본검사와 함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를 실시하여 표본검사 및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 모두 보급중 검사규격을 충족할 것.

가) 소집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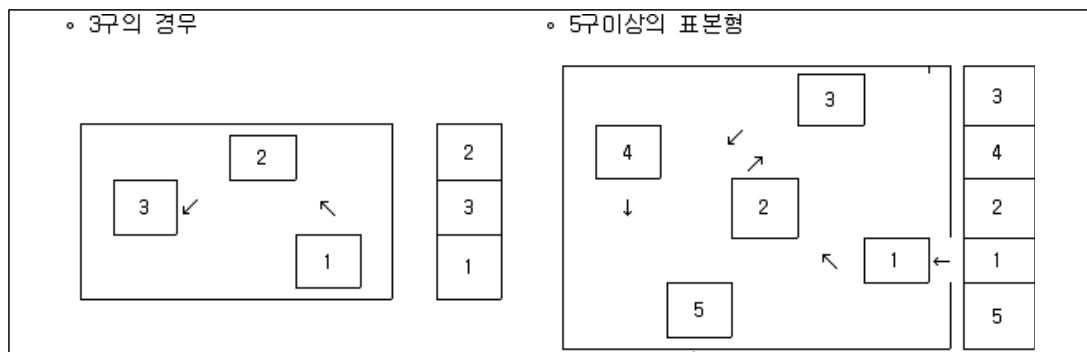
과종별, 생산자별, 품종별, 품위별로 편성하되 소집단 크기는 10,000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표본검사

(1) 표본 조사구 결정

포장의 크기	표본조사구수
40.0a 까지	3개 조사구 이상
40.1 ~ 60a	5개 조사구 이상
60.1a 이상	30a 초과시마다 1구씩 추가 (예: 85a의 경우는 6개 조사구)

(2) 표본 조사구 선정



다) 포장검사 검사규격

항목 생산단계	최고한도(%)			
	이품종주	이종주	병주	
			특정병	기타병
원원종포	무	무	무	2.0
원종포	무	무	무	2.0
모수포	무	무	무	6.0
증식포(보급종)	1.0	무	2.0	10.0

※ 특정병(바이러스·바이로이드)은 다음과 같다.

- 사과: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SGV(Apple stem grooving virus), ASPV(Apple stem pitting virus), ApMV(Apple mosaic virus), ASSVd(Apple scar skin viroid)
- 배: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ASGV(Apple stem grooving virus), ASSVd(Apple scar skin viroid)
- 복숭아: ACLSV(Apple chlorotic leaf spot virus), HSVd(Hop stunt viroid)
- 포도: GLRaV-1(Grapevine leafroll associated virus-1), GLRaV-3 (Grapevine leafroll associated virus-3), GFkV(Grapevine fleck virus)
- 감귤: CTLV(Citrus tatter leaf virus), CTV(Citrus tristeza virus), SDV(Satusma dwarf virus), CiMV(Citrus mosaic virus)

※ 기타병은 사과·배·복숭아의 경우 근두암중병(뿌리혹병)을 포도는 근두암중병(뿌리혹병)·뿌리혹선충(필록세라)을 감귤은 궤양병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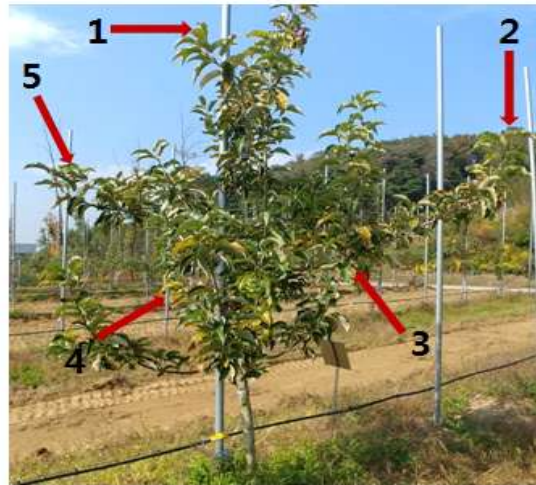
- 3) 2회차 포장검사 시 표본 조사구에서 아래의 시료 추출량 및 방법에 따라 시료를 추출하고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을 실시하여 포장검사 검사규격의 특정병 최고한도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시료 채취 시기 및 부위

시료 채취시기 및 부위	채취량
○ (4~6월) 발아신초, 경지수피, 꽃 ○ (7~9월) 신초선단부 유엽, 성엽, 엽병, 과피 ○ (10~2월) 줄기수피, 성엽, 과피	묘목당 5점 (고르게)

나)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채취는 나무 1주 단위로 잎 등 필요한 검정부위를 나무 전체에서 고르게 5개를 깨끗한 시료용기(지퍼백 등 위생봉지)에 채취한다.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을 위한 시료 채취 부위(예시)

다) 시료 추출량

과수 묘목 검사단위 크기에 따른 감염 수준별 최소 표본추출(임의표본추출)크기에서 최소표본의 크기(표본추출 95% 신뢰수준, 5% 검출 수준) 이상으로 한다.

출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31(FAO/IPPC 사무국, 2016년)

검사단위의 크기(주)	95% 신뢰수준에서 검출(감염)수준 별 최소 표본의 크기					99% 신뢰수준에서 검출(감염)수준 별 최소 표본의 크기				
	5%	2%	1%	0.5%	0.1%	5%	2%	1%	0.5%	0.1%
25	24	-	-	-	-	25	-	-	-	-
50	39	48	-	-	-	45	50	-	-	-
100	45	78	95	-	-	59	90	99	-	-
200	51	105	155	190	-	73	136	180	198	-
300	54	117	189	285	-	78	160	235	297	-
400	55	124	211	311	-	81	174	273	360	-
500	56	129	225	388	-	83	183	300	450	-
600	56	132	235	379	-	84	190	321	470	-
700	57	134	243	442	-	85	195	336	549	-
800	57	136	249	421	-	85	199	349	546	-
900	57	137	254	474	-	86	202	359	615	-
1,000	57	138	258	450	950	86	204	368	601	990
2,000	58	143	277	517	1553	88	216	410	737	1800
3,000	58	145	284	542	1895	89	220	425	792	2353
4,000	58	146	288	556	2108	89	222	433	821	2735
5,000	59	147	290	564	2253	89	223	438	840	3009
6,000	59	147	291	569	2358	90	224	442	852	3214
7,000	59	147	292	573	2437	90	225	444	861	3373
8,000	59	147	293	576	2498	90	225	446	868	3500
9,000	59	148	294	579	2548	90	226	447	874	3604
10,000	59	148	294	581	2588	90	226	448	878	3689

4) 과수별 묘목의 길이 및 직경 기준을 충족할 것

작 물	묘목의 길이(cm)	묘목의 직경(mm)	주요 병해충 최고한도
○ 사과			근두암중병(뿌리혹병): 무
- 이중접목묘	120 이상	12 이상	
- 왜성대목자근접목묘	140 이상	12 이상	
- 포트묘(접목)	25 이상	2 이상	
○ 배	120 이상	12 이상	근두암중병(뿌리혹병): 무
○ 복숭아	100 이상	10 이상	근두암중병(뿌리혹병): 무
○ 포도			근두암중병(뿌리혹병): 무
- 접목묘	50 이상	6 이상	
- 삽목묘	25 이상	6 이상	
- 포트묘(접목)	50 이상	2 이상	
○ 감귤류			궤양병: 무
- 접목묘,	80 이상	7 이상	
- 포트묘(접목)	80 이상	7 이상	

주) 1) 묘목의 길이 : 지체부에서 묘목선단까지의 길이

2) 묘목의 직경

가) 접목부위 상위 10cm 부위 접수의 줄기 직경. 단, 포도 접목묘는 접목부위 상하위 10cm 부위 접수 및 대목 각각의 줄기 직경, 포도 삽목묘는 신초분기점 상위 10cm 부위의 줄기 직경

나) 다만, 포트묘의 경우 사과는 접목부 상위 10cm 부위, 포도는 접목부 상위 3cm 부위, 감귤은 접목부 상위 5cm 부위의 줄기 직경

3) 대목의 길이 : 사과 자근대목 40cm 이상, 포도 대목 25cm 이상, 기타 과종 30cm 이상

4) 사과 왜성대목자근접목대묘측지수 : 지체부 60cm 이상에서 발생한 15cm 길이의 결가지 5개 이상

5) 배 있는 개수 : 접목부위에서 상단 30cm 사이에 있는 5개 이상

6) 주요 병해충 판정기준 : 증상이 육안으로 나타난 주

나. 재배포장

1) 동일한 묘목 생산지에서 3년을 초과하여 생산하지 말 것. 다만, 선충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해 토양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꽃가루나 매개충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변의 무병묘로 확인되지 않은 같은 속·종의 나무나 과수원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격리되어 있어야 할 것

3) 재배포장은 토양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소독은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

다. 생산 및 관리

- 1) 품종 또는 계통별로 묘목을 재식하여야 할 것
- 2) 70% 알코올 및 유효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 1% 함유 또는 락스 4배 희석액을 비치하고, 재배포장 출입 시 사용된 신발과 농기자재들을 5분 이상 소독할 것
- 3) 농기계는 출입 전후에 식물체의 일부분이나 흙 등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세척할 것
- 4) 가위 등 장비는 항상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시마다 1%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소독해야 할 것
- 5)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 병해충 방제, 물관리, 양분관리를 적정 수준으로 실시할 것
- 6) 병해충 방제 및 농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 설>

무병화인증의 표시사항(제23조의5 관련)

1. 앞면

무 병 화 인 증	무병화 인증번호(인증기관코드-인증종자업자코드-과종-품종-일련번호)	
	① 작물명:	⑤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② 품종명:	⑥ 무병화인증일자:
	③ 대목명:	⑦ 무병화인증 유효기간:
	④ 생산업체명(종자업등록번호):	⑧ 무병화인증기관:
인 증 기 관 명 (직 인)		

비고

가. 바탕색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나. 표지 크기는 10cm(가로) x 3cm(세로) 이상으로 한다.

2. 뒷면

※ 품종의 특성 및 재배상의 주의사항

무병화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제23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다. 무병화인증 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무병화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수량, 유효기간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라. 인증종자의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인증종자의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회수·폐기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종자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1호	인증취소	—
2)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 등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2호	시정조치	인증취소
3)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3호	시정조치	인증취소
4)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무병화 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4호	인증취소	—

나. 인증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1호	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및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인증종자 회수·폐기
2)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 등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2호	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3)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3호	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4)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무병화 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6조의4 제1항제4호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종자원장이 실시한다.

나. 제2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해당 인증종자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의8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써 무병화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것

나. 인력

- 1). 무병화인증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인력으로 인증책임자 1명, 검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2). 1)에 따른 인력 중 1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생명과학 계열(농학, 원예, 육종, 생물학 등) 등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중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4년 이상 농학, 육종, 원예 등의 연구·검사·검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종자관리사 등 이와 관련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다) 농업 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에서 무병화인증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무병화인증기관에서 2년 이상 인증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분자표지 분석, 성분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시설 및 장비

- 가.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을 수행하기 위한 바이러스 분석실로 60㎡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에 필요한 장비를 기기별 1대 이상 갖추어야 하며, 검정 장비는 다음과 같다.

- 1) 시료분쇄장비(막자사발 등 시료분쇄기)
- 2) 핵산추출장비(자동핵산추출기)
- 3) 유전자증폭장비(PCR 기기)
- 4) 유전자판독장비(전기영동장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3조의1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 라.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의 내용에 따라 인증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기간에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제36조의5제8항제1호에 따른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무병화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제36조의5제8항제2호에 따른 무병 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른 무병화 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및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라.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않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한 후 법 제3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바. 종자업자가 법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사.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u>또는 거짓으로 신고한</u>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아. 법 제40조에 따라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자.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은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차.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 <u>거나 거짓으로 표시한</u>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0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4호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 등의 조사나 종자 또는 묘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5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60일
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 또는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2호 또는 법 제39조의2제1항제6호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43조제1항 관련)

1. 수수료의 금액

가.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수수료

- 1)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당 3만8천원
- 2) 등재심사

항목	수수료
서류심사	품종당 5만원
재배심사	품종당 연간 50만원. 다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 보호 출원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같이 하는 경우는 품종당 10만원으로 한다.

나.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품종당 2만원

다. 국가보증에 관한 수수료

- 1) 국가보증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2) 국가보증검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3) 국가보증검사

항목	수수료
포장(圃場)검사	10아르(a)당 2만원
종자검사	품종당 5만원
종자 재검사	품종당 5만원

라. 보증서 발급에 관한 수수료

- 1) 국문: 무료
- 2) 영문: 품종당 5천원

마.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의 신고에 관한 수수료: 품종당(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품종 단위당) 3만원. 다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바.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수수료

산림용종자: 품종당 5만원

사. 종자검정 신청 수수료

항 목	수 수 료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항목별 건당 8,600원
발아율	건당 30,800원
수분	건당 12,000원
과수묘목 바이러스	건당 20,000원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건당 10,000원

아. 시험·분석 신청에 관한 수수료

1) 시험·분석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2) 시험·분석

항목	수수료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종자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자.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수수료

1) 분쟁조정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2) 분쟁조정 관련 시험·분석

항목	수수료
재배시험	품종당 50만원
유전자분석	품종당 30만원
종자품질분석	품종당 5만원

차.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 수수료

1) 지정·갱신 신청: 건당 30만원

2) 지정·갱신 심사를 위한 현지조사 출장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금액을 적용하고, 출장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며,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카. 무병화 인증·갱신 신청 수수료

1) 무병화인증 수수료는 인증심사를 위한 서류심사, 현장심사, 품질검사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항 목	내 용	수수료	산출근거
심사·검사비 (가+나+다)	가. 서류심사	신청건당 5만원	중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6 품종목록 서류심사료 준용
	나. 현장심사	심사료 20만원 +10a당 2만원	심사료 + 중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6 포장검사료 준용
	다. 품질검사 (바이러스·바이로이드 실 내검사)	검사료 20만원 +점당 4만원	검사료 + 6점(59시료)*4 만원=24만원

2) 무병화 인증 심사를 위한 현지조사 출장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금액을 적용하고, 출장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며,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무병화인증 수수료 반환 기준

항 목	반환 사유		반환금액
심사·검사비	서류심사, 현장심사, 품질검사	실시 전	전액반환
		실시 후	반환대상 아님

타. 그 밖의 수수료

- 1)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 1건당 5백원. 다만, 복사가 필요한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면당 1백원씩을 더한다.
- 2) 각종 서류의 사본 신청: 1면당 2백원

2. 수수료의 납부기간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2)의 등재심사 수수료: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나. 제1호다목3)의 종자검사 수수료: 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제1호사목2)의 시험·분석 수수료 및 같은 호 아목2)의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라. 그 밖의 수수료: 신청 시

무병화 인증(신규·갱신) 신청서(제23조의2 관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규] 묘목 출하 1개월 전까지 [갱신] 60일 이내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사업장 소재지		
	④법인명칭 (종자업등록번호:)		⑤전화번호
신청 내용	⑥신청구분		[]신규 []갱신
	⑦작물명		
	⑧품종명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⑨대목명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⑩생산계획 면적 및 수량	면적(㎡)	
		수량(주)	
		묘목식재일	출하예정일
	⑪원종-어미나무 관리기관	원종	
		어미나무	
⑫바이러스 검정기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자산업법 제36조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종자업 등록증 사본 1부 2. 무병화인증 신청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계획서 1부 3. 무병화인증 신청종자의 포장재식도 1부 4. 어미나무의 종자검정 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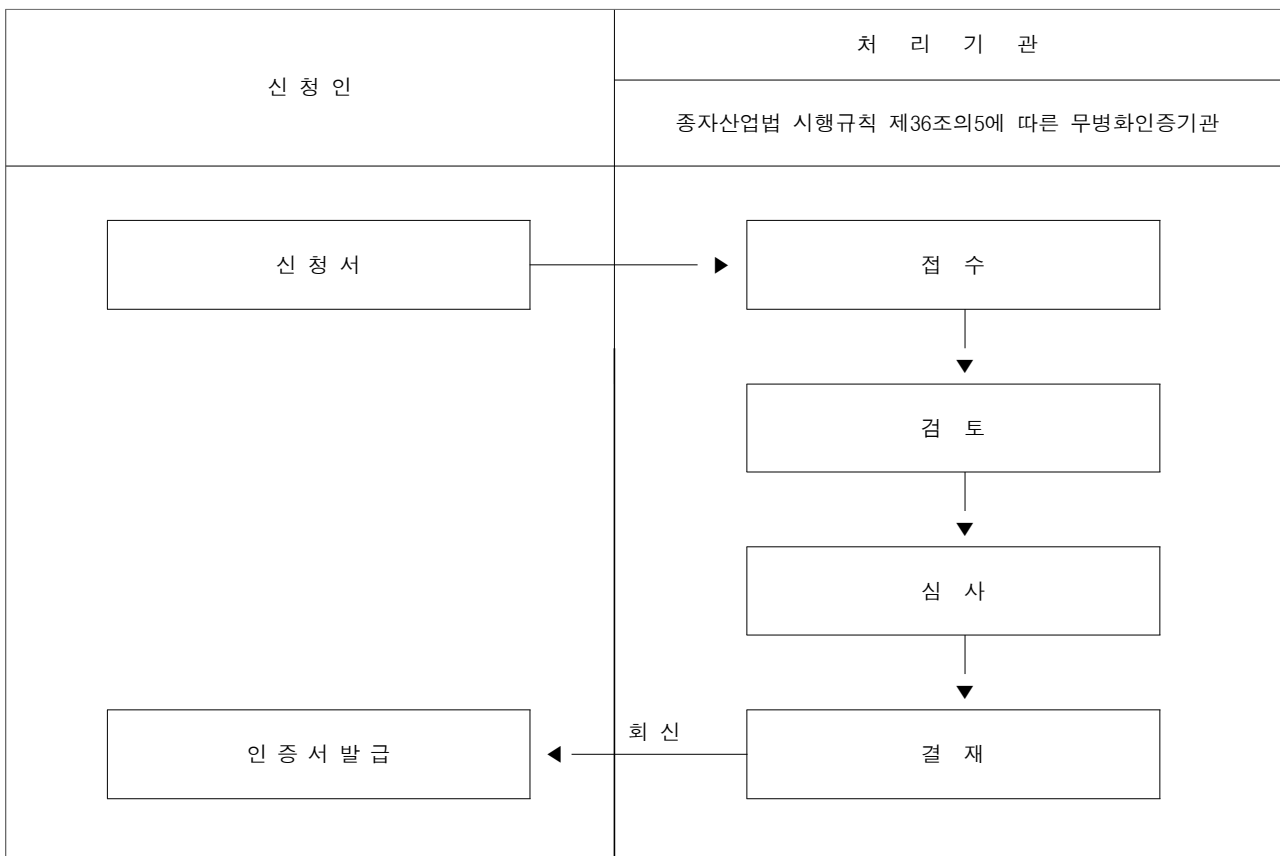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농어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첨부서류 중 제1호는 최초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첨부서류 중 제2호는 품종별로 작성하되, 어미나무 계통이 다를 경우 동일 품종이더라도 어미나무 계통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3호는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무병확인증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첨부서류 중 제4호는 신청품종의 어미나무에 대한 바이러스 검정 확인서를 말하며 어미나무 계통별로 바이러스 검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무병화 인증서(제23조의4 관련)

신 청 인	①성명 (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사업장 소재지	
	④법인명칭 (종자업등록번호:)	⑤전화번호

인 증 내 용

⑥인증번호	인증기관 코드 - 인증종자업체 코드 - 과종 - 품종 - 일련번호
⑦작물명	
⑧품종명	
⑨인증수량	
⑩유효기간	

「종자산업법」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무병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종자산업법 제36조의5에 따른
(직인)
무병화인증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150g/㎡) 또는 중질지(80g/㎡)]

무병화인증기관 []지 정 신청서(제23조의9 관련) []갱 신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기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대상	대상작물	[] 사과 [] 배 [] 포도 [] 복숭아 [] 감귤
	생산단계	[] 원원종 [] 원종 [] 어미나무 [] 보급묘

「종자산업법」 제3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병화인증기관(지정 ·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제23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묘목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 · 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 포함)	수수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6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제23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묘목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 · 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제출서류)	→	지정기준 심사	→	지 정	→	고 시
신청인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210mm×297mm[중질지 80g/㎡]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제23조의10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구 분	당 초	변 경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업무 수행 여부 [] 여 [] 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10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검토 국립종자원	→	변경 사실 확인 국립종자원	→	변경 여부 판정 국립종자원	→	지정서 작성 (지정서 내용 변경 시) 국립종자원	→	지정서 발급 국립종자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제23조의9 관련)

1. 기관명(대표자):
2.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3. 종자업등록번호:
4. 소재지(전화번호):
5.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지정일):
6. 인증대상: [] 사과, [] 배, [] 포도, [] 복숭아, [] 감귤
7. 유효기간:

「종자산업법」 제3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9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종자원장

직인

무병확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 m²]

(앞쪽)

제 호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
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국립종자원

60mm×90mm(PET-G 카드, 연노란색)

(뒤쪽)

조사 공무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8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종자원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무병화인증 종자의 판매·보급 과정 조사
2.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이 증을 다른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면
안됩니다.

종자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외국인은 국적) 전화번호	
	법인 명칭		
내용	상 호		
	종자업 구분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종자업	[] 채소 [] 과수 [] 화훼 [] 버섯	
	종 류	[] 뽕 [] 식량작물 [] 기타	
	취급 작물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 일반 [] 버섯 [] 해당사항 없음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의 생산장소		
	[묘목]		
[접수]			
[대목]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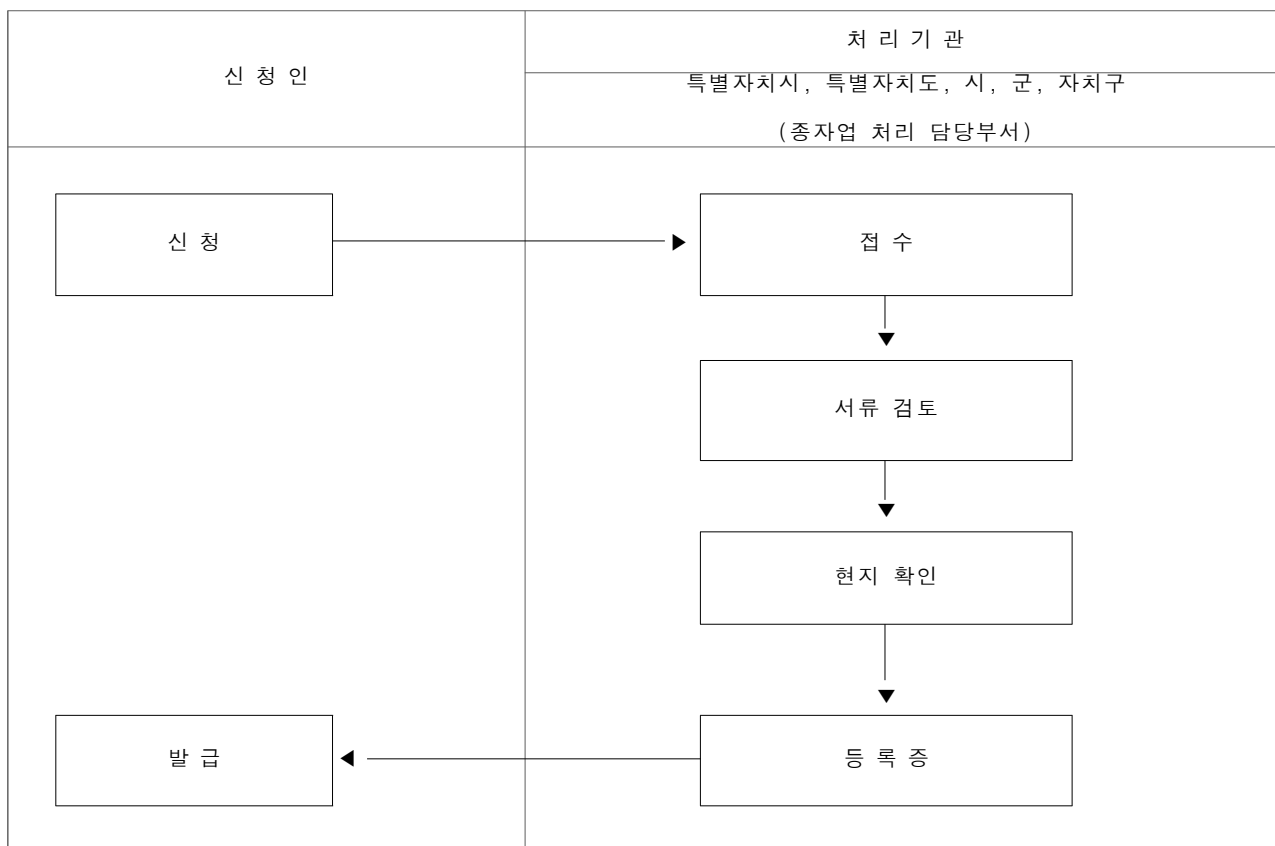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란에는 개인 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생년월일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적어야 합니다.
3. "법인 명칭"란은 개인은 적지 않으며, 법인은 법인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종자업 구분"란에는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종자업 종류"란에는 등록신청하는 종자업 종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하는 종자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취급 작물"란에는 취급하려는 작물의 종류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7.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란에는 [] 일반, [] 버섯, [] 해당사항 없음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8. "주사무소의 소재지"란에는 사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9. "주시설의 소재지"란에는 연구소(주연구소를 말합니다) 또는 농장(주농장을 말합니다)이 있는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10. "종자의 생산장소"란에는 종자의 생산이력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묘목, 접수 및 대목의 생산 지역을 적어야 합니다.
11.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 호		종자업등록증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		
내용	상 호		
	종자업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구 분	☐ 종자를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	
	종자업	☐ 채소 ☐ 과수 ☐ 화훼 ☐ 버섯	
	종 류	☐ 병 ☐ 식량작물 ☐ 기타	
	종자관리사 보유 여부		
	☐ 일반 ☐ 버섯 ☐ 해당사항 없음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시설의 소재지		
	<u>종자의 생산장소</u>		
<u>[요목]</u>			
<u>[접수]</u>			
<u>[대목]</u>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자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자 치 시 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발행번호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 명칭	전 화 번 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연장기간		
연장사유		

「종자산업법」 제3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수리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직인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불수리 통지서

발행번호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 명칭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불수리 사유		

「종자산업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는 수리되지 않았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직인

종자 수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 명칭	전화번호	
②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③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④품종의 명칭			
⑤종자의 수량			
⑥종자의 용도			
⑦종자를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위 신고인(대리인)은 본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과 일체의 제출서류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종자산업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종자 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유전자변형 종자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4.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자산업법」에 따른 해당 품종의 신고 접수, 신고 내용의 확인과 유통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종자산업법」 제40조의2에 따른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관할세무서, 수입적응성시험기관에 제공하고, 종자 수출입 신고 또는 식물검역 신고 내용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는 해당 품종의 신고가 취소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신고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의 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⑥ “종자의 용도” 란에는 자가소비나 연구용 등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⑦ “종자를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란에는 신고인이 종자를 구입하거나 양도받은 출처와 구체적인 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작성방법은 별지 제22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 · 추가 등 정정을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고인(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제출



접수 ➔ 서류 검토 ➔ 결정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산림청 · 국립종자원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

신 고 번 호 :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 명칭	전화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의 명칭

종자의 수량

「종자산업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5에 따라 종자의 수입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립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직인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생산이력의 기록·보관에 관한 부분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연 락 처	(044) 201 - 2480